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8

제출일자 : 2023. 3. 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가.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242에 위치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2020. 9. 구지면 달성2차로 221 신축 이전하여 제2조(위치)에 대한 수정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위치) 1호의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주소를 수정하고자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장애인복지법」 제59조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1. 19. ~ 2. 8.)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논공읍 논공로 242”를 “구지면 달성2차로 2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2. (생략)	제2조(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221 2.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